

# 삼계초등학교 학칙(개정안)

제정 1996. 3. 1  
개정 2005. 3. 1  
개정 2009. 3. 2  
개정 2011. 5. 2  
개정 2013. 2. 28  
개정 2016. 4. 14  
개정 2021. 2. 3.  
개정 2023. 3. 8.  
**개정 2023. 12. 예정**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(목적)

본교는 초.중등교육법 제38조(초등학교 목적)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명칭)

본교는 임실 삼계초등학교라 칭하며, 본 규칙은 삼계초등학교 ‘학칙’이라고 한다.

### 제3조(위치)

본교는 전북 임실군 삼계면 삼계1길 20-3에 둔다.

## 제2장 수업연한.학년.학기 및 휴업일

### 제4조(수업연한)

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. 다만 초 . 중등교육법 제27조(조기진급 및 조기졸업)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.

### 제5조(학년.학기)

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.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

### 제6조(휴업일 등)

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1. 관공서의 공휴일
2. 여름방학, 겨울방학과 학년말의 휴가
3. 개교기념일 : 10일 10일
4. 학교장재량휴업일

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 임시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법정 전염병,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이 등교를 중지시켜 다른 학생에 전염되지 않도록 한다.(학교 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5조) 법정 전염병은 1종, 2종, 3종을 모두 포함한다.

### 제3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

#### 제7조(학급수)

학급편성은 당해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.

#### 제8조(학생정원)

학생정원은 당해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 정원으로 한다.

### 제4장 교육과정, 수업일수, 평가, 수료 및 졸업

#### 제9조(교육과정)

교육과정은 초.중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정한다.

#### 제10조(수업일수)

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제45조에 의거 주5일 전면 실시로 학교의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. 단, 학교장은 천재지변,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.

#### 제11조(수업운영)

수업운영은 다음과 같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-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.
-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.
- ③ 현장체험학습 활동유형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, 교류체험학습(개별 위탁 체험학습, 학교

간 교류 체험학습) 효도방문학습, 가족동반체험학습 등으로 하며 개별위탁학습기간은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, 가족동반체험학습기간과 학교간 집단체험학습기간은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- ④ 이외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.

## 제12조 (평가)

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적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매년 학생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## 제13조(수료 및 졸업)

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.

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
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.

## 제5장 출결사항 및 체험학습

### 제14조 (출결처리)

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.

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.

1.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와 같은 천재지변,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
2.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

3.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

4.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

-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: 연 15일 이내

\* 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, 경계'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'가정학습'을 승인 사유에 포함

(위기경보 '관심, 주의'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)

-개인 교환학습 : 연간 1개월 이내

-단체 교환학습: 2주 이내

5.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일수(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)

6. 기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

③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'지각'으로 처리한다.

④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'조퇴'로 처리한다.

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'결과'로 처리한다.

⑥ 위 제 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'지각', '조퇴', '결과'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

다.

- ⑦ 지각,조퇴,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 1회의 결석으로 한다.
- ⑧ 전입생의 지각,조퇴,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,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.

### 제15조 (경조사 출결처리)

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 단,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 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.

구 분	대 상	일수
결 혼	* 형제, 자매, 부, 모	1
입 양	* 학생본인	20
사 망	*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	5
	* 증조부모, 외증조부모	3
	* 형제, 자매 및 그의 배우자	1
※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.		

### 제16조 (출석사항 평가)

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가 한 번도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.
- ②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또는 결석이 3회인 경우 단 1회라도 지각, 조퇴, 결과가 없는 경우 정근으로 한다.

### 제17조 (결석의 종류)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:

- 1)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자료)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
- 2)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학부 모의견서, 처방전, 담임확인서 등)가 첨부된 결석신고를 5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

② 미인정으로 결석: 태만, 가출, 고의적인 출석 거부, 미인정어학연수 등

- 1) 미인정결석 아동 발생 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조치하도록 한다.
  - 가) 미인정결석 발생 시 관리대응 매뉴얼에 의해 조치하며 학생의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한다.
  - 나) 미인정결석 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.
- 2) 대응방법

- 가) 미인정결석 1~2일 째 지속적인 **유선연락**을 통한 결석 학생의 결석 사유를 확인, 출석을 독려한다.
- 나) 미인정결석 3~6일 째 결석 학생에 대한 **가정방문** 실시,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.
- 다)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**면담(내교)**을 요청한다.
- 라) 미인정결석 7~8일째 **필요시**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담 시 출석 독려,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확인한다. 면담(내교)에 응하지 않은 경우,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나 **아동보호 전문기관**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.
- 마) 미인정결석 10일 이후 월 1회 학생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독려를 위한 방문을 실시하고 복귀관리 및 유예·면제 관리한다.
- 바) 미인정결석 10일 이후, 미인정결석학생 정보 나이스 등록(담임), 미인정결석학생 정보 나이스 제출(담당) 업무를 학생관리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.

### ③ 기타 결석:

- 1)부모, 가족 봉양, 가사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2) 공납금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
- 3)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
※ 기타결석은 내부결재를 통해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.

## 제18조 (국내외 체험학습)

학생들에게 체험활동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질.적성 계발 및 탐구력, 창의력을 신장시켜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.

① 개별 위탁.교류 체험학습은 국내 1개월(4주)(연간 1회 이내), 국외 1개월(4주)(연간 1회 이내), 효도.방문체험학습(학기별 1회 이내)은 국내는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연 10일 이내에서, 국외는 30일(연간 1회 이내)을 원칙으로 한다. 또한 집단 (교류) 체험학습(교과.창의적체험학습시간 등에서 확보)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,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.(※시행령 제48조 제⑤항)

② 체험학습유형에 따라 3일전까지(감염병 위기경보 ‘심각,경계’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) 신청.승인 절차를 마친 후 실시하고, 체험학습결과는 비치장부 또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활용한다.

### ③ 체험학습에 따른 비치서류는 다음과 같다.

- ‘보호자’란 친권자 및 후견인, 사실상의 보호자를 뜻한다.
- 1. 체험학습안내서 및 신청서(보호자 작성→학교장에게 제출)
- 2. 체험학습 승인서(학교장 승인→보호자에게 통보)
- 3. 위탁.교류체험학습 의뢰서(학교장→위탁교육기관)

4.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(학생용 학습지→학교장에게 제출)
5. 위탁·교류체험학습 결과 보고서(위탁·교류교육기관→학교 제출)

④ 기타 상세한 체험학습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## 제5장 입학·재입학·편입학·전학·취학유예·미취학 등

### 제19조(입학 시기)

- ①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- ② 본교의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.

### 제20조(입학결정)

- ① 본교의 입학은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본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.
- ② 만 5세아 조기입학자에 대해서는 매년 초 전라북도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고시하는 세부 지침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한다.

### 제21조(편입학)

- ① 외국 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 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한다.
-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.
- ③ 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### 제22조(전학)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.

### 제23조(취학유예)

- 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.
- ②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.
-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여권 사본 등을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.

### 제24조(미취학)

-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학교에 아동이 입학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규정에 의해 조치하도록 한다.
- ② 미취학 아동 발생 시 보호자 유선연락을 통해 독려하고 아동과 직접 유선 연락하여

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.

- ④ 아동의 소재, 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.
- ⑤ 학교장은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미취학하는 경우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 면담(내교)을 요청하며 면담 요청 통지 시 면담(내교)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수사가 의뢰됨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.
- ⑥ 유선연락 또는 가정방문 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발견자는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.
- ⑦ 학교장은 위원회와 연계하여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취학을 독려한다.

##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

### 제25조(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)

-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, 2학년에서 4학년, 3학년에서 5학년,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.
-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다.

### 제26조(조기진급의 범위)

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, 2학년 4학년, 3학년에서 5학년,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.

### 제27조(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)

학교장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국어, 수학, 과학, 사회, 영어(초 1.2학년은 국어, 수학, 슬기로운 생활)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
2.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(IQ)가 140 이상인 자
3. 국가기관(중앙행정부처)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,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

### 제28조(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)

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(3월 말) 이내에 한다. 다만,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(4월 말) 이내에 한다.

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 제21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(이하 “조기진급·졸업대상자”라 한다)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.

④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.

⑤ 조기진급·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.

### 제28조(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)

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·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.

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⑦, ⑨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⑦ 국어, 수학, 과학, 사회,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

⑨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

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.

### 제30조(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)

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·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22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

2. 제23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. 다만,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,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.

### 제31조(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)

-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위원회는 기획 및 운영 전문가(교감, 교무부장, 연구부장)와 교육과정 전문가(교과 담당교사), 학급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한다.
- ② 동위원회는 평가방법 및 일정 결정, 평가 도구 선정·제작,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은 조기이수과정 등과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.

### 제3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(除斥)된다.
- ② 제24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## 제7장 학생 포상, 징계에 관한 사항

### 제33조(학생포상)

- ①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우수한 자, 근면성이 뛰어난 자,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포상과 관련된 대상자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한다.

### 제34조(징계)

- ① 초·중등 교육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고 [세부사항은 ‘삼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’에 자세히 기술, 운영한다.](#)

##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

### 제35조(학생자치활동의 보장)

-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[세부사항은 ‘삼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’에 자세히 기술, 운영한다.](#)

## 제9장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수업참여권 보장

### 제36조(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)

- 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에 의거하여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

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
2.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
3.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
4.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·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

#### 제37조(장애학생에 대한 수업참여권 보장)

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하여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,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·실습, 현장견학,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, 배제,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,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, 특수교육 교원, 특수교육보조원,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,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,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, 추가시험 등(이하 "추가서류 등"이라 한다)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제9장 학칙개정

#### 제36조(학교규칙개정절차)

① 학교장은 학교규칙의 개정 하고자 할 때는 교직원 사전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칙 개정 승인 신청을 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개정을 완료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개정된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학생자치회에 충분히 안내하여 설명한 후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효력발생) 이 학칙은 임실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